

의안번호	2213451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5.11.10.
추계번호	25E541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3년 연장 및
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,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2028년 말까지 적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1조 7,204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5조 4,745억원(연평균 1조 8,24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2026~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4조 895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조 3,851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(안 제108조)	-17,204	-18,230	-19,311	-54,745	-18,248
- 국세(74.7%)	-12,852	-13,618	-14,425	-40,895	-13,632
- 지방소비세(25.3%)	-4,353	-4,612	-4,886	-13,851	-4,61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)	○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 - 공제율: 현행 유지(재활용폐자원 3/103, 중고자동차 10/110) ○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 - 공제율: 10/110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와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각각 추정하여 합산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가.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

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은 각각의 ‘취득가액 × 공제율’로 산출되는 구조임
 -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 3/103, 중고자동차 10/110
- 세수효과는 최근 조세지출액을 바탕으로 추계하되,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을 구분하여 반영함
 - 조세지출액(징수 기준)¹⁾은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, 세부 항목을 구분할 수 없음
 - 공제 대상인 취득가액(신고 기준)²⁾은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, 이를 활용해 공제액을 추정하고 각 비율을 산

1)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2) 국세청 제공자료 및 국세통계연보

출해 반영함

-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한도³⁾가 적용되나 자료의 한계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, 동 추계에서는 한도를 상회하는 신고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
□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각각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금액의 최근 증감률 추세를 반영

나.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

□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은 '취득가액 × 공제율(10/110)'로 추정

- 해당 사업자의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자료) 자료를 활용하며, 최근 평균 금액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

□ 최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조세지출액은 2022년 1조 4,409억원, 2024년 1조 5,370억원 수준

- 조세지출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금액과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

[표 2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세지출액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
조세지출액(E)	14,409	13,853	15,370

주: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3)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% -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가액

- 2022~2024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은 연평균 7.0% 감소하고,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은 연평균 7.4% 증가하는 추세

[표 3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(신고 기준)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, %)

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감률
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(a)	83,518	71,323	72,310	-7.0
중고자동차 취득가액(b)	123,188	124,045	141,963	7.4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 및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취득가액 자료를 바탕으로,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각각에 대한 최근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

- 취득가액 기준으로 추정 시 2024년의 경우 전체 매입세액공제액 중에서 재활용폐자원의 공제액은 14.0%, 중고자동차의 공제액은 86.0%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
 - 항목별 공제액은 '취득가액 × 공제율'로 산출

[표 4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비율 추정(신고 기준)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, %)

		2022	2023	2024
재활용 폐자원	공제액 ($A=a \times \text{공제율 } 3/103$)	2,433	2,077	2,106
	전체 대비 비율 ($\alpha=A/(A+B)$)	17.8	15.6	14.0
중고 자동차	공제액 ($B=b \times \text{공제율 } 10/110$)	11,199	11,277	12,906
	전체 대비 비율 ($\beta=B/(A+B)$)	82.2	84.4	86.0

주: 취득가액은 신고(귀속) 기준 금액이며,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공제액은 징수 기준의 최종 조세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음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항목별 공제액 비율(추정)을 반영 시, 2024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은 재활용폐자원 2,156억원, 중고자동차 1조 3,214억원으로 추정
 - 항목별 조세지출액은 '전체 조세지출액 × 각 공제액 비율(추정치)'로 산출

[표 5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세지출액 추정(항목별):
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
조세지출액(E)	14,409	13,853	15,370
- 재활용폐자원(E*α)	2,571	2,155	2,156
- 중고자동차(E*β)	11,838	11,698	13,214

-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6년 1조 7,094억원 등으로 추정
- 항목별로 2024년 조세지출 추정치에 최근의 취득가액 증감률을 반영해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, 이를 합산함
 - 항목별 취득가액의 증감률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6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시 조세지출액(추정):
2025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
재활용폐자원	2,006	1,867	1,737	1,616
중고자동차	14,185	15,228	16,347	17,548
합계	16,191	17,094	18,084	19,165

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는 2026년 1조 7,094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5조 4,343억원(연평균 1조 8,11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
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	-17,094	-18,084	-19,165	-54,343	-18,114

나.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
□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취득가액 규모는 2024년 1,976억원, 2025년 상반기 620억원 수준으로 집계됨

[표 8]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 규모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년 상반기
취득가액	1,976	620

주: 6개 인증사업자의 취득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함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자료

- 최근의 취득가액 실적을 바탕으로,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공제액은 2024~2025년 연평균 146억원 수준으로 추정함
- 2025년 취득가액의 경우, '2025년 상반기 실적×2'로 추정함
 - 매입세액공제액은 '취득가액×개정안의 공제율(10/110)'로 산출

[표 9]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 시 세수효과 추정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(추정)	연평균
취득가액(a)	1,976	1,240	1,608
매입세액공제액(a×10/110)	180	113	146

주: 2025년 취득가액은 2025년 상반기 실적이 하반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함

-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2028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110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695억원(연평균 1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0]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 시 세수효과: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	-110	-146	-146	-402	-134

다. 전체 세수효과

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,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2028년 말까지 적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1조 7,204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5조 4,745억원(연평균 1조 8,24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2026~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4조 895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조 3,851억원 감소 예상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: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(a)	-17,094	-18,084	-19,165	-54,343	-18,114
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(b)	-110	-146	-146	-695	-139
합계(a+b)	-17,204	-18,230	-19,311	-54,745	-18,248
- 국세(74.7%)	-12,852	-13,618	-14,425	-40,895	-13,632
- 지방소비세(25.3%)	-4,353	-4,612	-4,886	-13,851	-4,617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